

투자 위험 등급
1 등급[매우높은위험]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10% 리밸런싱 분할매수 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파생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10% 리밸런싱 분할매수 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10% 리밸런싱 분할매수 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파생형]

구 분	종류 A	종류 C	종류 C-e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3800	A3801	A3802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4. 작 성 기 준 일 : 2016년 9월 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6년 9월 2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11년 6월 7일 ~ 2011년 6월 20일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본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펀드투자 판매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 목차(目次)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작성기준일 : 2016.9.7)

NH-Amundi 1.5배 레버리지 10% 리밸런싱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1호 [주식혼합-파생형]

(펀드 코드: A3799)

투자 위험 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1.5배 레버리지 10% 리밸런싱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1호 [주식혼합-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NH-Amundi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조건에 도달한 경우에 리밸런싱을 하며, 신탁계약기간의 연장 및 투자신탁의 상환이 결정되는 투자신탁으로서 리밸런싱 및 상환을 위해 모두투자신탁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KOSPI 200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익을 추구하는 모두투자신탁(NH-Amundi 1.5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또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두투자신탁(NH-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 신탁[채권])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주식파생형), 개방형, 단위형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		
모집(판매) 기간	2011년 6월 7일 ~ 2011년 6월 20일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16.09.22	종속 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년 까지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제4영업일 전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1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연장 후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이 신탁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제4영업일 전 1,100원 이상이 되는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에 이 투자신탁의 계약을 해지한다.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 참고		
종류(Class)	Class A	Class C	Class C-e
가입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판매수수료	납입금액1%이내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보수 (연%)	구분	-		
	판매	0.7000	0.9800	0.8400
	운용 등	운용:0.5500 신탁업자:0.0300 일반사무관리:0.0150		
	기타	0.0190		
	총보수·비용	1.314	1.594	1.454
매입 방법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 30분 이전 : 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 30분 이전 :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 5영업일 지급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KOSPI 200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NH-Amundi 1.5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또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NH-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최초 설정 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NH-Amundi 1.5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30%, “NH-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70%수준 투자합니다.

② 운용구조: “NH-Amundi 1.5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을 적립식 분할매수 전략에 따라

투자비율을 매월 증가시키고 이와는 별도로 가격분할매수 수행

3.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김주인	1977	퀀트운용	13개	약1조5000억좌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본부 차장			한국자금중개 2005 ~ 2006 KR선물 2006 ~ 2007 PCA자산운용 2007 ~ 2008 NH-Amundi 자산운용 2008~ 현재
--	-------	--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책임)운용전문인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4. 투자실적 추이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5.02.11 ~16.02.10	14.02.11 ~15.02.10	13.02.11 ~14.02.10	12.02.11 ~13.02.10	11.06.20 ~12.02.10
1.5배레버리지10%리밸런싱 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1호 [주혼-파생]C-A	-8.45	-2.38	-5.56	0.98	6.88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주 2)종류A(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투자위험은 일반위험, 특수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투자위험 다음과 같음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하락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상품의 특성상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 위험관리

- 환위험 관리 전략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지표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일반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6.6~41.8%, 지방소득세 포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참고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참고

[집합투자기구공시정보안내]

- 증권신고서: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및판매회사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및한국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한국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및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nh-Amundi.com)
- 수시공시:한국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및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nh-Amundi.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10% 리밸런싱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파생형]

구 분	종류 A	종류 C	종류 C-e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3800	A3801	A380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주식파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1)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2) 모자형 (모투자신탁과 그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되는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 조좌

※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최초설정 후 추가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11년 6월 7일 ~ 2011년 6월 20일(예정)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매입, 환매가 가능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10% 리밸런싱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파생형]

구 분	종류 A	종류 C	종류 C-e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3800	A3801	A380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시	주 요 내 용
2011. 6. 20	최초설정(예정)
2016. 7.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 7. 30	관매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2016.09.22	- 모투자신탁 변경 (NH-Amundi 단기채형 증권모투자신탁[채권] → NH-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운용보수 인하(0.60% → 0.55%)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으로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 년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100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을 6 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연장 후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신탁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 1,100 원 이상이 되는 신탁계약기간 종료일에 이 투자신탁의 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추가적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누적기준가격”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결산 시 이익분배를 안 했다고 가정하고, 최초설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기준가를 의미하며, 공시 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사항은 제 5 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집합투자업자

(1)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NH-Amundi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농협문화복지재단 빌딩 02-368-3600 (www.nh-amundi.com)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김주인	1977	퀀트운용본부 차장	13 개	약 1 조 5000 억좌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한국자금중개 2005 ~ 2006 KR선물 2006 ~ 2007 PCA자산운용 2007 ~ 2008 NH-Amundi 자산운용 2008~ 현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퀀트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책임)운용전문인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일시	변경 전	변경 후
2016. 03. 02	서우석 <AI팀장 >	김주인 <퀀트운용본부 차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개방형, 단위형, 종류형, 모자형,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주식파생형)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비율		
		종류 A	종류 C	종류 C-e
가입자격 ^{주 1)}		제한없음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이내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보수	운용보수	연 0.55%	연 0.55%	연 0.55%
	판매보수	연 0.70%	연 0.98%	연 0.84%
	신탁보수	연 0.03%	연 0.03%	연 0.03%
	사무관리	연 0.015%	연 0.015%	연 0.015%

주 1)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 233 조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상기의 자투자신탁 외에 추가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KOSPI 200 일일등락률의 1.5 배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NH-Amundi 1.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을 법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또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NH-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2) 월간분할매수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시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투자신탁재산의 30%, NH-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70% 우선 투자하고, 매월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를 추가 매수하고, 해당 분만큼 NH-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을 매도하여 주식시장에 대한 정기적 분할매수를 수행합니다.

(3) 가격분할매수

상기 (2)의 월간분할매수와는 별도로, 이 투자신탁 설정일 익영업일의 KOSPI 증가를 기준으로 KOSPI 증가가 매 5% 하락할 경우, 익영업일에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파생형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를 매수하고 해당 분만큼 **NH-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을 매도합니다.

(4) 리밸런싱(모투자신탁 간 비율조정)

상기 (2), (3)의 분할매수를 수행하면서 이 투자신탁의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정해진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할 경우 각각의 모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을 최초설정시의 투자비중(**NH-Amundi 1.5 배 레버리지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NH-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 3:7)으로 비율로 조정하고 다시 상기 (2), (3)의 분할매수를 수행합니다. 단, 이 경우 상기 (2)의 월간분할매수의 기준일은 **목표기준가격 도달일***을 기준으로 조정되지만, 상기 (3)의 가격분할매수의 기준이 되는 KOSPI 지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리밸런싱 이후의 목표기준가격은 직전의 목표기준가격에서 매 100 원씩 상향됩니다.(누적기준가격 기준).

※ 목표기준가격 변경의 예시

최초 목표기준가격	1,100 원
1 차 리밸런싱 이후 목표기준가격	1,200 원
2 차 리밸런싱 이후 목표기준가격	1,300 원
3 차 리밸런싱 이후 목표기준가격	1,400 원
...	...
N 차 리밸런싱 이후 목표기준가격	[1,000+ 100(N+ 1)]원

* 상기의 목표기준가격은 누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누적기준가격은 투자신탁의 결산 시 이익분배금이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되는 기준가격으로서 공시되지 않습니다.

* 상기의 “목표기준가격 도달일”은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공시되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매일 공고·게시되며 T일 운용 종료 이후 계산된 기준가격은 T+ 1일에 공시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목표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각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중을 최초 설정시점의 비중으로 리밸런싱(비중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투자자에 대한 확정수익지급의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목표기준가격 도달 이후 각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리밸런싱(비중조정)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에 의해 추가적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리밸런싱 이후에도 투자신탁재산의 일정부분을 계속 주식시장에 투자하므로 추가적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NH-Amundi 1.5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파생형]	20%이상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이상 투자하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위험평가액 기준 100%이내로 하여 KOSPI 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1.5 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파생형 집합투자기구.
② NH-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	80%이하	국내채권에 신탁재산의 60%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특히, 투자신탁재산의 50%를 초과하여 국공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③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10% 이하,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음)
1.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 ③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 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가.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① 최초 설정 시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에 30%, “NH-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70%수준 투자합니다.
- ② 운용구조: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을 적립식 분할매수 전략에 따라 투자비율을 매월 증가시키고 이와는 별도로 가격분할매수 수행

A. 분할매수 전략

- ㉠ 초기투자비용: 투자신탁 설정 초기에는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과 “NH-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유동성 등”에 3:7의 비율로 투자하게 됩니다.(가격분할매수를 위한 KOSPI 지수 증가 결정일 익영업일에 모투자신탁 매수)

최초설정일	가격분할매수를 위한 KOSPI 지수 증가 결정일	모투자신탁 매수일
T 일	T+1 일	T+2 일

- ㉞ 월 적립식 투자: 매월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의 투자비중을 전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씩 증가시키게 되며, 최대 100%수준까지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때 모투자신탁 적립일은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을 기준으로 매 1 개월 해당일의 익영업일이 됩니다.(월간분할매수)
- ㉟ 추가매수: “㉞ 월 적립식 투자”와는 별도로 모집 종료 후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익영업일의 KOSPI 지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매 5%이상 하락 시(증가기준) 익영업일에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파생형]”의 투자비중을 이 투자신탁 순자산의 10%증가 시킵니다.(가격분할매수)

B. 리밸런싱(모펀드간 투자비중 조절)

상기 A 의 분할매수를 수행하다 이 투자신탁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아래의 목표기준가격* (최초설정일의 누적기준가격은 1,000 원)에 도달된 이후에는 “NH-Amundi 1.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과 “NH-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최초 설정시의 투자비중으로 리밸런싱한 후 상기 A 의 분할매수 전략을 계속 수행합니다. 단, 이 경우 월간분할매수의 기준일은 목표기준가격 도달일*을 기준으로 조정되지만, 가격분할매수의 기준이 되는 KOSPI 지수는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리밸런싱 이후의 목표기준가격은 직전의 목표기준가격에서 매 100 원씩 상향됩니다. (누적기준가격 기준).

※ 목표기준가격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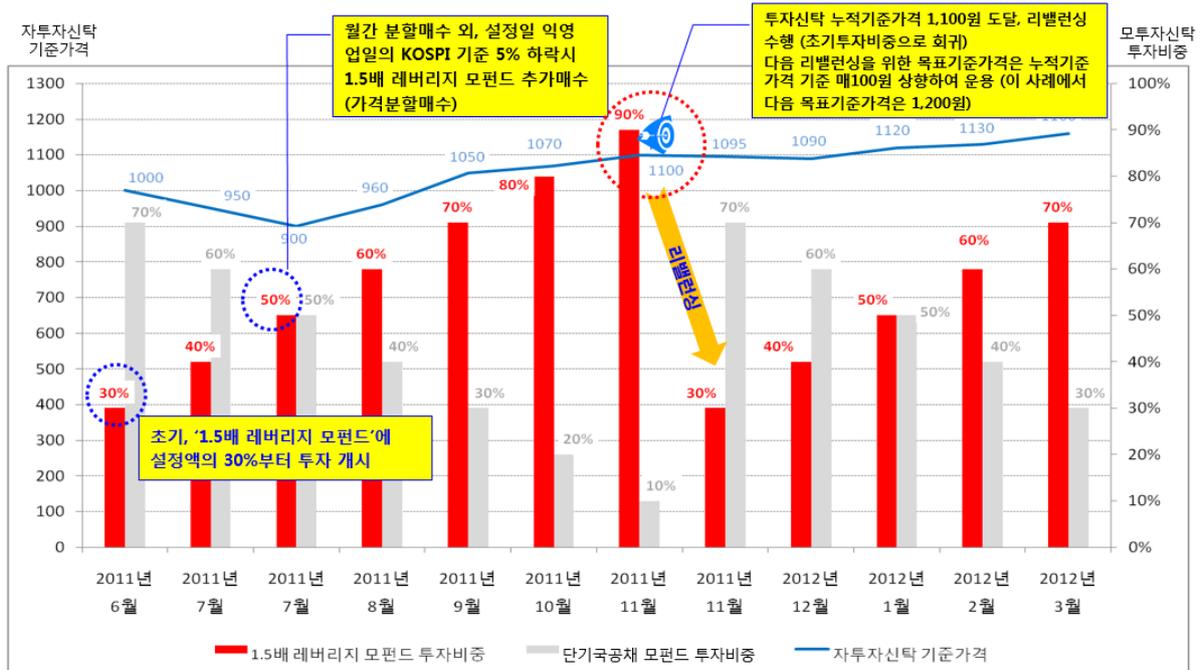
최초 목표기준가격	1,100 원
1 차 리밸런싱 이후 목표기준가격	1,200 원
2 차 리밸런싱 이후 목표기준가격	1,300 원
3 차 리밸런싱 이후 목표기준가격	1,400 원
...	...
N 차 리밸런싱 이후 목표기준가격	[1,000+ 100(N+ 1)]원

* 상기의 목표기준가격은 누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누적기준가격은 투자신탁의 결산 시 이익분배금이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되는 기준가격으로서 공시되지 아니합니다.

* 상기의 “목표기준가격 도달일”은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공시되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매일 공고·게시되며 T일 운용 종료 이후 계산된 기준가격은 T+ 1일에 공시됩니다.)

리밸런싱은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날(기준가격 공시영업일 기준)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수행됩니다. 또한, 리밸런싱 이후에도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주식파생형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이후의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목표기준가격은 리밸런싱을 위한 기준이며 실제 실현되는 최종 수익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C. 투자예시



※상기의 자투자신탁 기준가격은 누적기준가격(결산 시 이익분배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산출된 기준가격을 의미)을 의미하며 공표되지 아니합니다.

※상기의 투자 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장이 변동되지 아니함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운용과정에서 상기의 투자비중은 투자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 투자 전략상 유의사항

- ①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2 년이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100 원 미만일 경우 신탁계약기간은 6 개월 단위로 연장됩니다. (단,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신탁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 1,100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탁계약기간 종료일에 상환됩니다)
- ② 신탁계약기간의 연장 이후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다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제 4 영업일 전 1,100 원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기간 종료일에 상환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 상환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에 따른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추가적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판매보수율의 차이에 의해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따라서 리밸런싱 및 신탁계약기간의 연장의 기준이 되는 종류 A 수익증권 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종류 C, Ce)을 매수한 수익자의 경우 해당 종류(종류 C, Ce)의 누적기준가격은 리밸런싱 및 신탁계약기간의 연장의 기준이 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종류 C, Ce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는 종류 A 의 누적기준가격에 따라 리밸런싱 및 신탁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 ④ **비교지수(Benchmark):**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시점으로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금액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의 투자신탁으로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특정지수를 비교지수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에 준하게 되며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서 편입하는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종목위험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사항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의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 됩니다. 또한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율 위험에 노출 됩니다. 신탁재산이 투자되는 국내 주식 및 채권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개별 주권 및 채권의 가격을 등락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도 가능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위험관리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p>특히 이 투자신탁은 레버리지효과를 주된 투자전략으로 이용하므로 일반 주식형 투자신탁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파생상품 투자위험을 내포합니다.</p>
<p>신용위험</p>	<p>신용위험은 투자 대상의 신용 상태가 변화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 국공채가 될 경우의 신용위험은 매우 작습니다. 단, 신용채권의 경우 신용위험(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에 노출 됩니다. 즉 국내 채권 투자 시 신용위험은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주식의 경우에도 주식을 발행한 주체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파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투자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위험</p>	<p>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p>	<p>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p>
<p>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p>	<p>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p>
<p>적극적 매매 위험</p>	<p>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활용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합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p>
<p>리밸런싱 및 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위험</p>	<p>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조건에 도달한 경우에 리밸런싱, 신탁계약기간의 연장 및 투자신탁의 상환이 결정되는 투자신탁으로서 리밸런싱 및 상환을 위해 모두자신탁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공시기준가격과 누적기준가격의 불일치에 따르는 위험</p>	<p>이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리밸런싱, 신탁계약기간의 연장 및 투자신탁의 상환 등은 누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누적기준가격은 투자신탁의 결산 시 이익분배금을 분배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산출되며 공시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누적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p>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채권투자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외화자산에서의 환차손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되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고 환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까지 기간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지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이 투자신탁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19.56%**로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부여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펀드는 레버리지 펀드로 수익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상기 투자위험등급분류는 NH-Amundi자산운용의 자체기준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 A	제한없음	있음
종류 C	제한없음	없음
종류 C-e	온라인가입자	없음

(3)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일)의 다음영업일(D+1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 이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15시 30분 이전에 매입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30분 이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5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 이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15시 30분 이전 환매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2 영업일전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 3 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빈번한 환매를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빈번하게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 및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는 계속 투자 중인 기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환매수수료 부과 후에 실제로 수령하시는 금액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에 예상하신 금액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내 용
종류 A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C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e	

※ 다만, 이익금은 “투자원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제투자원 지분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됩니다.

※ 환매수수료의 면제

1. 이 투자신탁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전부가 환매되는 경우
2. 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는 제외)
3.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목적식 투자자

다. 전환

해당사항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매영업일 공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에 게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펀드간 판매보수가 차등 적용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각 종류간에 기준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
-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및 해외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
채무증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자가 제공한 가격 (1) 채권평가회사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 신용평가업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5)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6) (1)~(5)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7) (1)~(6)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e	
가입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이내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환매시
환매 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전환 수수료	없음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단위 : %)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0.5500			매 3 개월 후금 및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 해지 시
판매회사보수	0.7000	0.9800	0.8400	
신탁업자보수	0.0300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0.0150			
기타비용	0.0190	0.0190	0.019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314	1.594	1.454	-
합성 총보수·비용	1.364	1.644	1.504	-
증권거래비용	0.0651	0.0651	0.0651	사유 발생시

-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신고서의 작성 시점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Class)의 비용(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등)의 경우 설정된 종류(Class)의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단위:천원)

구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	------	------	------	-------

종류 A	243	542	864	1,772
종류 C	173	538	926	2,014
종류 C-e	159	494	852	1,860

※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lassC 와 ClassA]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 년]이 되는 시점이나, class 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보수의 예는 이 투자신탁과 타 투자신탁과의 비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위형 투자신탁으로서, 상기 예시의 기간 전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8%, 주민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 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예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
세금		(+)100원 x 세율(15.4%) = 15.4원

예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원

예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
세금		(+)100원 x 세율(15.4%) = 15.4원

예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원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NH-Amundi 1.5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대한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증권시장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 및 시장상승 대비 초과이익 획득의 추구를 투자목적으로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투자목적으로 운용됩니다.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효과를 일으켜 증권시장에 대한 위험노출수준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5배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KOSPI 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1.5배의 수익률 추종.**

※ **일일등락률의 1.5배는 기간수익률의 1.5배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간 투자할 경우, 일일등락률의 1.5배를 누적한 수익률과, KOSPI 200 지수의 단순 기간수익률을 1.5배한 수익률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주식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포함 60% 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②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④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이하	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헷지 및 투자목적으로 사용>
⑤집합투자증권 등	40%미만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제 9 조제 21 항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⑥증권의 대여 및 차입	대여의 경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차입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 범위에서 20%이하	
⑦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⑧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u>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u>	
⑨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p>1.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 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p> <p>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⑤~⑦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2)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 내용	예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p>	
2. 동일종목 투자제한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단,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 (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법시행령제 79 조 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p> <p>(2) 파생결합증권</p> <p>(3)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p>	<p>최초설정일 로부터 1 개월간</p>

	<p>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 이 발행한 채권</p> <p>(4)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p> <p>(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p> <p>(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제 79 조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 매월 말일을 기준을 산정하며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이 10%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 하는 행위</p>	
<p>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4. 파생상품 거래</p>	<p>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을 매매하는 행위</p> <p>나.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라.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나’, ‘다’, ‘라’의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p>
<p>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투자신탁(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마.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p>	<p>‘가’의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p>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제80조제10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7.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법제 235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법제 191 조 및 제 201 조제 4 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신탁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8.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시행령제 34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	
9.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10. 투자한도 초과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부터 “6. 계열회사 발행증권”까지의 사항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발행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60% 이상)

◆ 기본투자전략

- 주식과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이용하여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전략의 기본으로 합니다.
-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하되, 주식과의 투자비율을 조절하여 투자신탁의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총액의 150% 수준으로 유지하여 KOSPI200지수의 일일등락률의 1.5배 수준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일일등락률의 1.5배는 기간수익률의 1.5배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장기간 투자할 경우, 일일등락률의 1.5배를 누적한 수익률과, KOSPI 200지수의 단순 기간수익률을 1.5배한 수익률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 현물(주식) 포트폴리오 구축
KOSPI 200 인덱스와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투자종목을 선정하여 **현물 Basket** 구성
- 주식관련장내과생상품 투자
과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
- 전체 포트폴리오 구축
KOSPI 200 지수, 현물 Basket, 주식관련장내과생상품의 가격수준을 고려하여 현물 포트폴리오(주식)와 주식관련장내과생상품(KOSPI200 선물 등) 포트폴리오의 **위험노출수준**을 투자신탁 일일 순자산총액의 1.5 배 수준이 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KOSPI 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1.5 배 수준을 추종하도록 운용



※ 이 투자신탁은 KOSPI 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1.5 배 수준의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투자전략의 기본으로 하지만 증권시장상황, KOSPI 200 주가지수선물 및 현물 지수와의 가격차이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일일등락률의 1.5 배 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기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KOSPI 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1.5 배의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 위험관리

- 비교지수(벤치마크)와의 추적오차를 통제하는 Risk 관리 방법:
 - KOSPI200 지수 일일등락률의 1.5 배 수준의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주식현물 Basket 과 장내과생상품(KOSPI 200 지수선물 등)을 사용하며, KOSPI200 지수 선물가격과 KOSPI200 지수의 가격차이로 인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NH-Amundi 자산운용의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적오차를 점검하여 추적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 KOSPI 200 Daily Return 1.5 Index

KOSPI 200 Daily Return 1.5 Index 산출식:
 당일 벤치마크 지수 = 전일 벤치마크 지수 x
 $[1 + \{ \text{당일 KOSPI200 지수 등락률} \times 1.5 - \text{CD 금리}(3 \text{ 월물}) / 365 \times 50\% \}]$

-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KOSPI 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1.5 배 수준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과 주식관련장내과생상품 투자에 따르는 비용을 감안하였습니다.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된 비교지수(벤치마크)와 변경 사유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2. NH- Amundi 단기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외 어음, 유동성 자산 등에 일부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채권 중 국공채(집합투자규약 17조 참조)에 투자신탁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채권	60% 이상 (국공채 50%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것에 한한다) · 국공채: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다만, 바목 및 사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한다),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것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지방채증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p>사.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p> <p>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p> <p>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p>
②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③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④집합투자증권 등	40% 미만	법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제 9 조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⑤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이하	법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⑥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⑦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⑧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⑨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⑩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p>1.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 비율 적용</p> <p>예외 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p> <p>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⑤ ~ ⑧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p>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상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동일종목 투자제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1) 지방채증권 (2)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3)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p>양도성 예금증서 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p> <p>(4)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p> <p>(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p> <p>(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계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p> <p>(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p> <p>(8)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p>
<p>3. 과생상품거래</p>	<p>가. 과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행위</p> <p>나. 과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4. 계열회사 발행증권</p>	<p>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p>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p>	<p>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및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p>

	<p>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6.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채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7. 금전의 차입	<p>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 법제 235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2) 법제 191 조 및 제 201 조제 4 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p>
8.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채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시행령제 34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
9.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10. 투자한도초과	<p>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2. 동일종목 투자제한, 3. 파생상품 거래), 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p>1. 투자신탁채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p> <p>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p> <p>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4.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p>나. 2. 동일종목 투자제한의 본문, 3. 파생상품거래, 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중 가 및 나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기본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채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투자신탁채산의

50%를 초과하여 국공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잔여 투자신탁재산은 어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일부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공채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다만, 바목 및 사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한다),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으로 구성되는 것에 한한다)

- 가. 국채증권
-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라. 지방채증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 사.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 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
- 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 Duration(실질만기) 전략 : 시장상황 분석에 따라 비교지수의 Duration 대비 투자신탁 보유 채권 포트폴리오의 Duration 조정 (0.2년 ~ 0.8년 수준 범위)
- 금융채 등 투자 : 시장상황에 따라 국공채 외 금융채(시중은행채 등) 등에도 투자하여 초과수익 추구

(2) 위험관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등을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 사전적 투자 유니버스 구성
- 운용자산의 만기 및 섹터 분포 분석
- 사후적 성과분석을 통한 운용의 적절성 점검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 KIS 머니마켓 국공채 지수 (100%)

상기 비교지수는 단기 국공채형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를 위해 잔존만기 10개월 이하의 국내 통안증권과 특수은행채권(또는 공사채)의 가격변화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듀레이션 0.5년 내외의 단기 채권지수입니다. (산출회사: KIS Pricing, INC)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일부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비교지수(벤치마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경우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지 아니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계획은 이 투자신탁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의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가치 변동에 따른 자본손익이 발생하며, 이러한 자본손익은 투자자의 이익과 손실로 귀속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기(2015.06.20 - 2015.12.19)	회계기간미경과	해당없음
제 4기(2014.06.20 - 2015.06.1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3기(2013.06.20 - 2014.06.19)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통합 대차대조표			
항 목	제 5기	제 4기	제 3기
	(2015.12.19)	(2015.06.19)	(2014.06.19)
운용자산	15,345,498	16,125,497	167,068,799
증권	15,161,355	16,111,334	164,351,39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84,143	14,163	2,717,40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91	53	2,095
자산총계	15,345,589	16,125,550	167,070,89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54,535	61,575	576,155
부채총계	54,535	61,575	576,155
원본	17,076,648	17,076,648	164,463,193
수익조정금	0	-1,291,845	-21,896,273
이익잉여금	-1,785,594	279,172	23,927,819
자본총계	15,291,054	16,063,975	166,494,739

[단위 : 원, %]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기	제 1기	제 1기
	(2015.06.20 - 2015.12.19)	(2014.06.20 - 2015.06.19)	(2013.06.20 - 2014.06.19)
운용수익	-663,998	1,496,975	37,610,375
이자수익	1,178	16,317	92,591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665,176	1,480,658	37,517,784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07,970	1,205,166	4,797,609
관련회사 보수	107,970	1,205,166	4,797,609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953	12,637	50,730
당기순이익	-772,921	279,172	32,762,036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 3) "통합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통합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통합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통합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5)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통 합 대 차 대 조 표

[단위:원]

과 목	제5기(2015.12.19)		제4기(2015.06.19)		제3기(2014.06.19)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84,143		14,163		2,717,403
1. 현금및현금성자산	184,143		14,163		2,717,403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0		170,000		0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70,000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5,161,355		15,941,334		164,351,396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5,161,355		15,941,334		164,351,396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91		53		2,095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91		53		2,095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5,345,589		16,125,550		167,070,894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54,535		61,575		576,155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4,535		61,575		576,155	
5. 기타미지급금					0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54,535		61,575		576,155
자 본						
1. 원 본	17,076,648		17,076,648		164,463,193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익잉여금	-1,785,594		-1,012,673		2,031,546	
(발행과수 당기: 17,076,648 좌		이익잉여금		279,172		23,927,819
전기: 17,076,648 좌)		수익조정금		-1,291,845		-21,896,273
전전기: 164,463,193 좌)						
(기준가격 당기: 914.89 원						
전기: 954.30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15,291,054		16,063,975		166,494,73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5,345,589		16,125,550		167,070,894

다. 손익계산서

통 합 손 익 계 산 서

[단위:원]

과 목	제5기(2015.06.20-2015.12.19)		제4기(2014.06.20-2015.06.19)		제3기(2013.06.20-2014.06.19)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178		16,317		92,591
1. 이 자 수 익	1,178		16,317		92,591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79		5,177,947		37,518,635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2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37,518,633
7. 기타거래차익	79		5,177,947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665,255		3,697,289		851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662,111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9		226	
8. 기타거래손실	3,144		3,697,200		625	
운 용 비 용		108,923		1,217,803		4,848,339
1. 운용수수료	45,803		525,994		2,049,902	
2. 판매수수료	60,064		653,185		2,645,495	
3. 수탁수수료	2,103		25,987		102,212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953		12,637		50,73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772,921		279,172		32,762,036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45261869		0.016348173		0.19920588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1.5배레버리지10%리밸런싱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1호[주혼-파생]C-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06.20 - 2015.12.19	0	0	0	0	0	0	0	0
2014.06.20 - 2015.06.19	1	1	0	0	1	1	0	0
2013.06.20 - 2014.06.19	3	3	0	0	2	2	1	2

(주1)2014.06.20 - 2015.06.19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918,888좌/1,918,888원

(주2)2013.06.20 - 2014.06.19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918,888좌/1,918,888원

1.5배레버리지10%리밸런싱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1호[주혼-파생]C-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06.20 - 2015.12.19	0	0	0	0	0	0	0	0
2014.06.20 - 2015.06.19	0	0	0	0	0	0	0	0
2013.06.20 - 2014.06.19	1	1	0	0	1	1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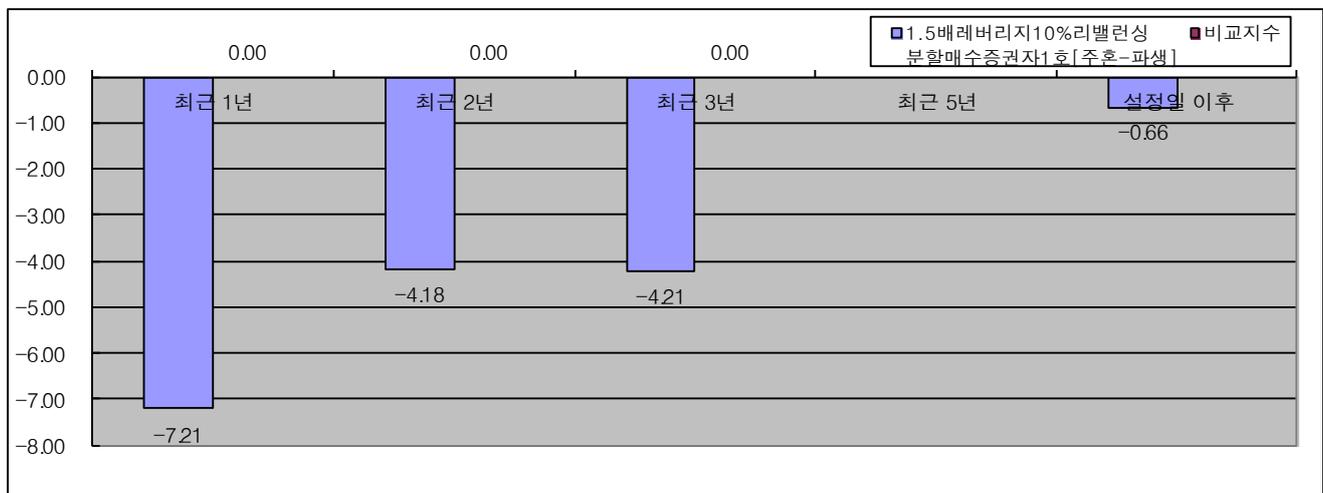
(주1)2014.06.20 - 2015.06.19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12,658좌/112,658원

(주2)2013.06.20 - 2014.06.19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112,658좌/112,658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5.02.11 ~16.02.10	14.02.11 ~16.02.10	13.02.11 ~16.02.10	null ~null	11.06.20 ~16.02.10
1.5배레버리지10%리밸런싱 분할매수증권자1호[주혼-파생]	-7.21	-4.18	-4.21		-0.66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1.5배레버리지10%리밸런싱 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1호 [주혼-파생]C-A	-8.45	-5.46	-5.49		-1.99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1.5배레버리지10%리밸런싱 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1호 [주혼-파생]C-C	-8.70	-5.72	-5.76		-2.26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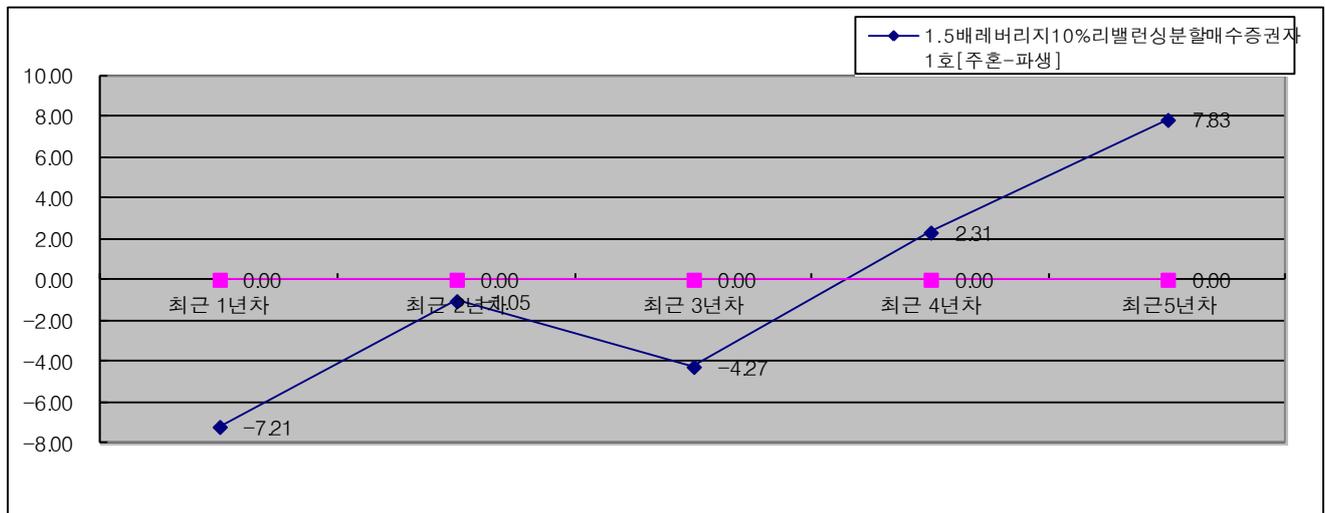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5.02.11 ~16.02.10	14.02.11 ~15.02.10	13.02.11 ~14.02.10	12.02.11 ~13.02.10	11.06.20 ~12.02.10
1.5배레버리지10%리밸런싱 분할매수증권자1호[주혼-과생]	-7.21	-1.05	-4.27	2.31	7.83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1.5배레버리지10%리밸런싱 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1호 [주혼-과생]C-A	-8.45	-2.38	-5.56	0.98	6.88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1.5배레버리지10%리밸런싱 분할매수증권투자신탁1호 [주혼-과생]C-C	-8.70	-2.65	-5.82	0.71	6.68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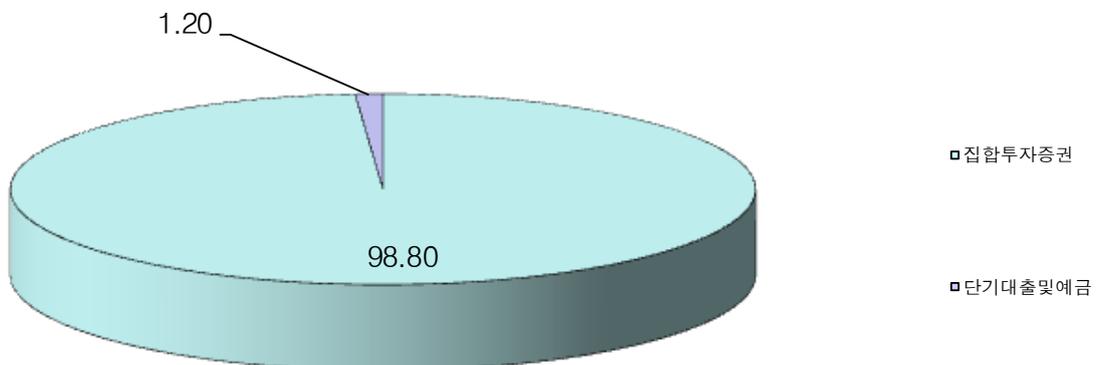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5.12.19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98.80)	(0.00)	(0.00)	(0.00)	(0.00)	(0.00)	(1.20)	(0.00)	(100.00)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98.80)	(0.00)	(0.00)	(0.00)	(0.00)	(0.00)	(1.20)	(0.00)	(100.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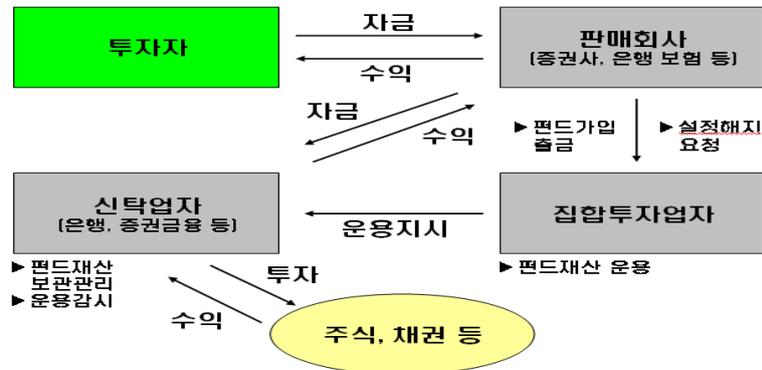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NH-Amundi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연락처 : 02-368-3600 (www.nh-amundi.com)	
회사연혁	2002.4 2003.1 2003.3 2003.8 2003.10 2004.5. 2005.3. 2006.9. 2009. 2 2009. 10 2010. 1 2010. 1 2010. 3 2010. 3 2011. 3	농협과 CAAM 간 자산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 체결 법인설립 (자본금 300 억, 농협 60%, CAAM 40%) 금감위로부터 투신업 본허가 취득 자문업 등록 투자일임업 등록 Asian Investor 로부터 2004 한국 최우수 운용사 선정 Asia Asset Management 로부터 2004 한국 최우수 신상품상 수상 국민연금 SRI 펀드 운용사로 선정 “라틴아메리카 포르테” 제로인 Best 펀드 선정 CAAM 홍콩/싱가포르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주식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문 계약 체결 CAAM 의 모회사인 Credit Agricole 그룹이 Societe Generale 그룹과 75 : 25 의 비율로 결합하여 Amundi 로 재출범 “1.5 배 레버리지 인덱스 ” 금융감독원선정 2009 년 최우수 금융신상품상 수상 “2010 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중앙일보 주최) “사회책임경영부문” 대상 수상 “1.5 배 레버리지 인덱스” 제 15 회 매경 금융상품대상 은상 수상 Asian Investor 로부터 한국 지속가능투자부문 최우수 운용사 선정
자본금	300 억	
주요주주	농협 60%, Amundi 40%	

나.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 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 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 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 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 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 하여야 합니다.

■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아이타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13. 12말	'14. 12말	항 목	'13. 12말	'14. 12말
현금 및 예치금	48,981	49,706	영업수익	19,712	29,373
유가증권	1,489	6,501	영업비용	9,649	13,516
유형자산	110	163	영업이익	10,062	15,857
기타자산	5,306	5,869	영업외수익	30	38
자산총계	55,888	62,241	영업외비용	175	115
예수부채	-	-	법인세	2,256	15,779
기타부채	4,217	5,353	당기순이익	7,661	12,217
부채총계	4,217	5,353			
자본금	30,000	30,000			
이익잉여금	21,670	26,887			
자본총계	51,670	56,887			

라. 운용자산 규모

[2016.02.10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2,987	16,555	27,114	0	458	19,966	0	0	1,674	0	81,364	160,11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주)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태평로 2 가 120 02-756-0506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의 무]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연락처	02-3215-1400	02-399-3350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등록일	2000. 6. 29.	2000. 7. 1.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koreaap.com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자총회등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 188 조제 2 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자산운용보고서

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말일
- 2) 투자신탁의 해지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법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제 81 조제 1 항제 1 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의미합니다.)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아래와 같은 위험에 관한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 ①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②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 ③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표에 관한 사항

1. 계약금액

파생상품거래의 유형별로 매수, 매도 및 순포지션(매수-매도)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명목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재.

- 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기초자산(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의 가격에 거래량(계약수)과 승수를 곱하여 산정
- 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옵션) :
옵션매수의 경우에는 옵션가격(프리미엄)에 계약수, 풋옵션 매도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콜옵션매도의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기초자산 가격 중 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 다만, 만기손익구조의 최대손실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옵션합성거래의 경우에는 그 최대손실금액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다.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기초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는 기초자산가격에 거래 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기초자산을 제외한 금전만 교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으로 한다.
- 라. 그 밖의 거래: 상기 가~다의 파생상품거래가 혼합된 경우에는 상기 가~다의 방법을 준용하여 사정한다.
- 마. 상기 가~라까지에 불구하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체결시 합의하는 명목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수효과(레버리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2.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당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과 손익이 없는 구간 및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등으로 나타내고 서술식으로 요약

3.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변동은 시나리오법에 따른 옵션위험액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산정, 이 경우 “옵션 위험액”은 “손익구조변동”으로 “옵션과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은 “파생상품”으로 각각 본다.

4.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최대손실 예상금액(VaR)):

최대 손실예상금액(VaR)은 보유포지션의 시장가치 x 신뢰구간에 따른 표준편차의 배수 x 포지션의 변동성(표준편차) x √보유기간 으로 산정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0 영업일의 보유기간 및 99%의 단측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일일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다만, 10 영업일보다 짧은 보유기간을 사용하여 최대손실 예상금액(VaR)을 산정한 후 이를 10 영업일에 상당하는 수치로 전환시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 영업일간의 최대 손실예상금액(VaR)은 1 일간의 최대손실예상금액(VaR) x √10 으로 산정한다.
- 나.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 년 이상의 자료관측기간을 기초로 하여 측정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최소한 3 개월에 1 회 이상 자료구성을 수정·보완시키되, 시장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 다. 옵션포지션에 대한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간편법 또는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p>※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시행령 제 84 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 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p>1) 선정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p>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p>[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 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 ⑤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용 어 풀 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과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 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